기획특집

지방분권과 자치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 자치조직권의 확보를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주 희 진

Ⅰ. 서 론

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고,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자기책임하에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박종관, 2014: 162).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규정하여 이를 '헌법적 가치'로 보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집권 위주의 통제와 폐단으로 진정한 지방분권과 자치구현은 요원한 실정이다. 예컨대,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2개의 조항만을 통해 형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의무(제117조), 의회에 관한 사항(제118조)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지방자치와 관련된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국회와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법령에 구속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는 이원대표제(기관분리형, 기관대립형)이므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이다. 지방의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기관으로, 해당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독자적인 합의제 기관으로서 집행부 감시기능 뿐만 아니라 정책기능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는 주민이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하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작동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문원식 외, 2017: 125). 따라서 지방분권이 진전될수록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두 기관, 즉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는 상호 감시와 견제를 원칙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 일반적으로 분리형 기관구성의 기본 취지는 지방의회와 단체장이 대등한 권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상호 균형과 견제를 통해 쌍방적인 협력관계를 지향하는 데 있다(채원호, 2010: 25-26).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민선자치 출범 이후 강시-약의회형의 이원대표제 형태로 운영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1995년 6·27 지방선거의 실시로 출범한 민선단체장 체제에서 단체장의 역할이 실제적으로 강화된 후, 지방의회와 단체장이 지난 권한과 역량의 불균형으로 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이 잘 발휘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채원호, 2010: 2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탐색하고 지방분권과 자치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가장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자치조직권의 측면에 보다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정부간 관계 유형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라이트의 정부간 관계 유형[1)]

라이트는 수직적 정부간 관계를 내포형(inclusive type), 분리형(separated type), 중첩형(overlapping type)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내포형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즉,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제적인 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의존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권력 유형은 자율적이지 못하고 중앙정부 또는 상위정부에 대하여 수직적 및 계층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따라서 이 모형에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일부로서 기능수행을 하고, 그 지방정부의 법적지위 역시 중앙정부의 일부로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독립된 법인격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의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으로 존재하거나 독립된 법

1) 이하의 내용은 하지만(2013). 「지방자치 시대의 정부간관계의 연구」 pp. 31-34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인격 지위 형식적 의미에서 부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위가 매우 미약하여, 중앙정부의 지휘 · 감독 · 통제를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둘째, 중첩형은 수직적 정부간 관계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그 기능과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권한 및 재정적 자원이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는 유형을 의미한다. 정부기능의 대부분이 중앙, 주, 지방정부에 의하여 동시에 작용하며, 자치권이 다소 제한된 상태에서 분산된다. 이 유형에서 지방정부는 일정 범위 내에서 독자적 사무와 자율권을 향유하게 된다. 이 유형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그들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셋째, 분리형은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경계를 이루어 독자적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기준에서 시작된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대등한 관계이지만,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포함관계를 유지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모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 기능과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권한 및 재정적 자원이 상호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체로 분리 · 독자적으로 각각 그 기능 수행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재정적 자원 역시 분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는 내포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복원 · 실시되기 이전에도 형식적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존재하였으며, 그 법적 지위는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으로 존재하였다. 또한 1991년 지방의회가 복원되고, 1995년 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됨으로써 형식적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실재에 있어 현 광역 · 기초단체는 그 기능과 권한 및 재정적 자원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예 · 종속된 상태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지휘 · 감독 · 통제를 강도 높게 받고 있다(경기도의회, 2017: 14).

2. 챈들러의 정부간 관계 유형[2)]

챈들러는 기능적 권한과 재정적 자원의 배분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행정기관형(agency), 동반자형(partnership), 대리인형(stewardship), 상호공존형(power dependence)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2) 이하의 내용은 경기도의회(2017).「지방분권형 개헌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pp. 16~17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첫째, 행정기관형에서 중앙정부는 정책결정 기능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단순 집행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이 유형은 지방정부의 자치권 및 재량권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라이트의 관점에서 행정기관형은 내포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동반자형은 중앙집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지방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면서, 지방정부의 운영상 재량권을 강조한다.

셋째, 대리인형은 동반자형과 같이, 중앙집권과 지방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지방정부의 제도적 재량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라이트의 관점에서 동반자형과 대리인형은 중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넷째, 상호공존형은 지방정부를 완전한 자치정부로 인정한다. 기능적 권한과 재정적 자원의 자주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해 상호 경쟁 · 공존하는 정부간형태이다. 이는 라이트의 관점에서 분리형의 수직적 정부관관계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Ⅲ.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 관계 : 자치조직권을 중심으로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자치조직권 측면에서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의 관계는「헌법」118조 제2항과「지방자치법」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에 기초하고 있다. 〈표 1〉과 같이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자치조직권에 대한 규정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헌법」제112조제2항에서 “지방의회의 조직 · 권한 · 이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선임방법 등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헌법에서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유보되어 있다.

둘째,「지방자치법」제11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2조제2항에서

는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은 헌법 규정에 따른 법률유보 뿐만 아니라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 제한되어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지방정부의 조직 및 기구,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조직권의 발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표 1〉 우리나라 자치권에 대한 규정

구 분	조 항	내 용
헌 법	제118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의 법률유보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 설치·지방공무원 정원·인건비 등 대통령령에 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제59조	의회전문위원조직
	제90조	의회사무처 조직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정원기준 규정	자치법 제59조(의회전문위원), 제90조(의회사무처), 제112조(자치단체 행정기구·공무원) 등 구체적 규정
행정자치부령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정원기준 규정 시행규칙	한시기구의 조직진단, 중기인력운용계획, 정원책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규정

자료: 경기도의회(2017). p. 27.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은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기준인건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행정기구 및 정원을 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총액기준인건비제도).

〈표 2〉를 보면, 지방정부의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결정의 실질적 기준이 되는 기준인건비의 최종 결정권자를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정부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결정할 수 있는 범위 역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

다. 또한 〈표 3〉과 같이 자치행정기구를 설치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까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치행정기구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자치권 및 자율성은 매우 제약되어 있는 실정이다.

〈표 2〉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의 기준·결정권자 (제4조)

구 분	제도적 실태	참 고
기구·정원 기준	기준인건비	총액기준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제1항)
기구·정원 기준 결정권자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한 기준인건비 산정(제2항)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산정방법(제3항)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제4항)

자료: 경기도의회(2017). p. 29.

구 분	고려사항
제1호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제2호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제3호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제4호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제5호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 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제6호	사무의 위탁가능성

자료: 경기도의회(2017). p. 29.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자치조직권 측면에서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의 관계는 매우 수직적이며 제한적인 관계에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 조직구성과 인력운영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간 관계

현행 지방자치법은 "제5장 지방의회"와 "제6장 집행기관"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어 의회와 집행기관이 통합되어 있는 기관통합형이 아니라 서로 분리되어 있는 기관대립형적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의 장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단지 '추천권'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독립기관인 의회의 장이 자신의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 의회의 견제와 감시 대상이 되는 집행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역설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의 역설적인 현상이 처음부터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다.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부터 시작하여 1973년의 지방자치법에 이르기까지 각각 제30조는 지방의회에 서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고 하였고, 간사와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1988년 지방자치법부터 제12절에서 사무기구와 정원을 규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부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규정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표 4〉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변천 과정

시 기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1949년~1961년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
1961년~1988년	지방의회 해산
1988년~1994년	단체장 임명 (의장과 협의)
1994년~2006년	단체장 임명 (의장이 추천)
2006년~2014년	일반직: 단체장 임명 / 하위직: 사무처장 임명

자료: 지방분권촉진위원회(2010)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기관대립형(강시장-약의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와 달리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의장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은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명, 휴직, 면직 및 징계 등을 실시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일본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5항), 일부는 기관의 상급 공무원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지방공무원법 제6조)되어 있다.

〈표 5〉 한국과 일본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 운영체제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사무직원의 인사권	단체장이 권한을 행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원화되어 일반직은 단체장, 그 외는 의장)	의장에게 권한 부여
지방의회 사무처장(국장)에 대한 인사권	단체장이 임명 (제주특별자치도: 의장이 임명)	의장이 임명
전문위원 / 정책자문위원	-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상임위원회별 정책자문위원) - 일반직은 단체장, 의장	- 별도의 전문위원은 존재하지 않음 - 조사부에서 관련 업무 실시

자료: 안영훈. (2017).「지방의회 발전과제와 미래」 발표자료. p. 66.

Ⅳ. 결론: 자치조직권 측면에서의 지방의회 역량강화 방안 모색

1. 의장에게 임면권 부여

지방의회의 인사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권 및 자치조직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은 의회 사무직원을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무명령권은 의장이,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집행기관의 견제 및 비판기능에 미온적인 의정지원 활동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잦은 전보인사로 인한 의회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 안전행정부의 「지방의회 제도개선계획」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을 부여(신규 임용, 직원 징벌권 제외)하는 것을 논의한 바 있고, 2014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사무처장은 현행 유지)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한편 2016년 추미애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현재 계류 중이다.

또한 지방의회 전문위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 논의 역시 필요하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력 운용이 곤란한 실정이다. 즉,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보좌기능을 중앙부처의 규정에서 제한·통제하고 있어 의회 기능의 자율성이 침해받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전문위원의 직급, 정수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전문위원을 임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전문 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의 질과 양의 증가[3]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의원 1인당 최대 9명의 보좌직원(별정직 7명, 인턴 2명)의 활용이 가능한 반면, 지방의원 1인당 전문위원은 0.27명에 불과하다. 지방의회 위원회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전문위원은 지방의회에 자치입법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두지 않고 있는 관계로 위원회에 회부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검토와 보고뿐만 아니라 소속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광역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입법정책지원 부서를 모두 두고 있으나, 도의 경우에는 강원[4], 충북, 전북, 전남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별도의 입법정책지원 부서를 설치하였고, 기초지방의회의 경우 대부분 상임위에 배치된 전문위원 외에 별도로 입법정책을 지원하는 부서 및 인력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입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재·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도 조례에 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 해당 분야 전문가를 채용, 위원회별로 3명 이내의 위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3) 2000년부터 2017년 3월 현재 3,101개의 국가사무가 지방이양 사무로 확정(이양완료 2,188건(71%), 추진중 913건(29%))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업무량이 증가되었다.

4) 강원도의회의 경우 별도의 입법지원기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수석 전문위원 하 "입법지원담당"에서 의원이 요청하는 의정자료의 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의 지방의회에서는 여러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2006년 인턴 보좌관제를 도입·시행하여 102명의 인턴보좌관을 채용하였고, 1인당 일백만원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방자치법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이 중단되었다. 광주광역시의회의 경우 2007년 유급 보좌관제를 추진하였으나 당시의 안행부 및 시민단체(경실련 등)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하였고, 2007년 충북도의회 역시 유급 보좌관제를 추진하였으나 당시 안행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때 안행부 등의 반대 사유는 지방자치법상 지원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는 2012년과 2013년 예산에 기간제 근로자(의회 인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항목이 유급 보좌관에 해당된다고 보아 불가 판결을 내렸고, 이에 예산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대법원 2012추60)을 제기하였으나 유급 보좌인력 지원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났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2011년 유급보좌관제(계약직 정책연구원)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패소하였다. 이에 2013년 경기개발연구원 규칙 제정을 통해 의정연구센터를 설립·운영하여 도의회 상임위별 연구원을 배정하고 업무를 지원하였으나, 2014년 10월 규칙 개정을 통한 의정연구센터 폐지 후 자치의정부로 변경, 2016년 폐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는 2015년 입법조사관 11명을 각 상임위별로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으로 조례안의 양적·질적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표 6〉 경기도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처리현황

2014년(입법조사관 채용 전)					2015년(입법조사관 채용 후)				
접수	가결	부결	폐기	계류	접수	가결	부결	폐기	계류
71	59	1	3	8	259	225	3	10	21

자료: 조승현.(2017).「지방의회 발전과제와 미래」 발표자료. p. 61.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업무에 대한 양적·질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

기 위해서는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제주발전포럼

[참고문헌]

경기도의회. (2017). 「지방분권형 개헌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2017). 「지방의회 발전과제와 미래」 발표자료.

경기도의회. (2017). 「대한민국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제안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3대 핵심 과제 및 24개 실천방안」. 경기도의회.

문원식·임정빈. (2017). 지방의회의원의 집행부 감시역량 분석 연구: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7(4): 125-158.

박종관. (2014). 지방분권의 방향과 과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7): 161-168.

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0).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지방의회 활성화소위 보고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채원호. (2010).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 방안. 「한국행정학회」 발표자료.

하지만. (2013). 「지방자치 시대의 정부간관계의 연구; 정부간 갈등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